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44

2026/5

발행인 조정희 | 총괄 박수진 | 감수 육근형 | 담당 문규은

Email dokdo.ocean@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9)

Contents

지역별 동향

중동 2

이란 호르무즈 해상교통 위기의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9) 또는 이메일(dokdo.ocean@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란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 위기의 지속과 국제사회의 대응

서론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거쳐 아라비아해까지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로서,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와 LNG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이다. 2026년 들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에서 전개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결의안 논의와 미국 주도의 결의안 수정 과정은 단순한 문안 조정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리 내부의 정치적 균열과 해상교통 보호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번 안보리 논의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란의 통항 제한 조치는 국제해협에서의 항행 자유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해상봉쇄 및 강제조치 추진 역시 유엔 헌장상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안보리 권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국제해양법, 유엔헌장 체제, 해양안보, 에너지 공급망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항행 상황 (2026. 5. 18.)

사진 출처: Reuters 홈페이지



경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자리잡고 있다. 2015년 이란과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이 2018년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핵 협상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국 또는 적국의 군사행동에 관여한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중립국 선박에 대해서도 사전 통항 허가, 지정항로 이용, 통항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해협 전체의 폐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해협 통항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므로 이란의 일방적 통항 제한은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란의 상선 공격, 기뢰 부설, 통항료 부과 시도 등을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다.

올해 5월 미국과 바레인이 주도하여 제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유엔헌장 제7장을 근거로 하여 회원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문안이 사실상 무력사용 또는 강제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미국이 수정 결의안 초안을 배포하면서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번 결의안 수정 과정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원칙적으로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접근법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법적 쟁점

우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과통항권이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한다. 통과통항은 선박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보장하고 항공기의 상공비행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며, 통과통항 제도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는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란은 통과통항 제도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간 타협의 결과일 뿐, 비당사국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관습국제법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은 자신도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지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와 통과통항 제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이란과 미국 양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지만,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 제도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1949년 ICJ의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제해협에서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권은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¹⁾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잠수함의 잠항, 군용기의 상공비행, 군사작전과 결합된 통과통항까지 인정되는지는 여전한 논쟁의 대상이다.

둘째, 이란의 통항 제한 조치가 국제법상 허용되는 해협 관리인지, 과도한 통항 방해인지가 문제 된다. 해협 연안국은 일정한 안전·환경·항행질서 유지를 위해 항로대를 지정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특정 국가 선박을 배제하거나 사전허가와 통행료 납부가 사실상 통항의 조건이 된다면 통항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립국 선박에 대한 통항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6조는 영해 통항을 이유로 외국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특별한 용역 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만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은 영해 통항보다 더 강하게 보호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 통항 자체에 대한 비용 부과는 국제해양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강제조치 문구 삭제는 유엔헌장 권한 문제와 연결된다. 유엔헌장 제7장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고, 비군사적 제재 또는 군사적 조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에 제7장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향후 강제조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헌장 제7장 문구가 호르무즈

1) 1946년 5월 영국 군함이 코르푸 해협을 통과하던 중, 알바니아 해안포대로부터 경고 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국은 코르푸해협이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 자국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알바니아는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ICJ는 코르푸 해협이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라는 점을 근거로, 평시에 외국 군함은 연안국의 사전허가 없이도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관습국제법에 근거한다고 판시하였다.



해협의 항행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군사작전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부 우방국은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란의 통항 방해와 상선 위협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넷째, 미국의 해상봉쇄 조치 역시 별도의 국제법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해상봉쇄는 전시 국제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될 수 있으나, 봉쇄가 휴전 중 실시되거나 중립국 선박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2.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2026.4.7.)

사진 출처: Reuters 홈페이지

정책적 시사점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우리에게 단순한 중동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국제해협 통항질서의 향후 전개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요 해운국이자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무역의 상당 부분을 해상교통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은 원유·LNG 수급, 해상보험료, 선박 운항 일정, 나아가 우리 선원의 안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국제법적 쟁점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통과통항권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가 취해야 할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란과 미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 비당사국이면서 통



과통항 제도의 관습국제법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이 항행 자유의 핵심임을 일관되게 지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연안국이 안보를 명분으로 통항권을 제약하는 시도는 협약 질서에 대한 위협이므로, 우리나라는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통항질서 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항료(transit tolls) 부과 관행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26조가 단순히 통항을 이유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서비스료(service fees)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통항료의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의 시도 선례가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호르무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교역에 더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도 연안국이 안보를 이유로 유사한 비용 부과나 통항 제한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행이 국제규범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다자 무대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국제해협 통항권, 연안국 안보, 안보리의 권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우리는 ① 국제법에 기초한 통항질서의 유지, ②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③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법적 쟁점을 일관된 정책 기조로 연결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출처: [1] 김원희,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고차방정식 이해하기, https://ksil.or.kr/front/publish/brief/read?id=AZ4_64ljej2Q6X5KO1LdkA&sd=16&sp=1&so=CREATED_AT_DESC (검색일 : 2026. 5. 22.)
- [2] 이기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와 통항문제, https://www.asaninst.org/data/file/s1_3/f15af67c43af11afd7a990dc4f32fd2b_E2YpMglJ_d5cd52813c2c109dc8c3011cd34a843ba8e15da7.pdf (검색일 : 2026. 5. 22.)
- [3] U.S. Department of State, The United States Propos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Defend Freedom of Navigation and Secure the Strait of Hormuz,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6/05/the-united-states-proposes-a-un-security-council-resolution-to-defend-freedom-of-navigation-and-secure-the-strait-of-hormuz> (검색일 : 2026. 5. 22.)
- [4] United Nations, UN/Strait of Hormuz Resolution, <https://media.un.org/avlibrary/en/asset/d355/d3552911>, (검색일 : 2026. 5. 22.)
- [5] EJIL Talk, Beyond the Blockaded Area: Interdicting Iranian Oil and



the Limits of Existing Maritime Legal Frameworks, <https://www.ejiltalk.org/beyond-the-blockaded-area-interdicting-iranian-oil-and-the-limits-of-existing-maritime-legal-frameworks/> (검색일 : 2026. 5. 22.)

[6] EJIL Talk, Codifying Coercion: Iran's "New Legal Regime" and the Law of International Straits, <https://www.ejiltalk.org/codifying-coercion-irans-new-legal-regime-and-the-law-of-international-straits/> (검색일 : 2026. 5. 22.)

[7] Reuters, US-proposed Iran resolution at UN faces likely vetoes from China, Russia,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proposed-iran-resolution-un-faces-likely-vetoes-china-russia-2026-05-07/>(검색일 : 2026. 5. 22.)

[8] Reuters, US revises UN resolutions on Iran, but China, Russia still expected veto,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revises-un-resolution-iran-china-russia-still-expected-veto-2026-05-08/> (검색일 : 2026. 5. 22.)

김 민 전문연구원

km0517@kmi.re.kr